



경 기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초고층재난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

1.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-946호('24.2.13.)와 관련됩니다.
2.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주요내용

가. 공포일(2024.2.13.) / 시행일(2025.2.14.)

나.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규정 개정(제2조제2호)

- 1) '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' 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
- 2)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요건을 '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한 수용인원' 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기준 구체화 / (현행) '1일 수용인원' 이 5천명 이상

다.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(제6조, 제7조, 제8조)

- 1) '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' 의 명칭을 '사전재난영향평가' 로 변경
- 2)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,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

라.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(제9조, 제10조)

- 신규 항목 추가, 기존 항목 구체화, 일부 항목들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
- 1) (신규) 피난안전구역 및 종합방재실 설치·운영 등 5종
- 2) (하위법령) 재난 유형별 대응·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등 3종

마.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등(제12조의2, 제33조, 제34조)

- 1) 총괄재난관리자가 질병, 휴가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신설
- 2)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금지 위반 과태료 상향(300만원→500만원)
- 3)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 권한 부여 및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(과태료 부과)

바.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(제20조의2, 제31조제1호)

- 1) (현행 1종)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
 - 2) (확대 9종) 피난안전구역 설치·운영 기준 위반, 유해물질 안전관리 미이행 등
- 조치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과태료 →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

4. 행정사항

- 지자체 및 소방관서에서는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에 관계 없이 '24.2.21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1부. 끝.

경기도지사



수신자 경기도남부 21개 시군, 24개 소방서(재난예방과, 소방안전특별점검단)

소방장

이민재

화재예방팀장

손용준

재난예방과장

전결 2024. 2. 14.

박태원

협조자

시행 재난예방과-2798

(2024. 2. 14.)

접수

소방안전특별점검단-1970

(2024. 2. 14.)

우 16550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, 4층 재난예방과 (권선동)

/ <https://119.gg.go.kr>

전화번호 031-230-2863

팩스번호 031-280-8501

/ ulmin1180@gg.go.kr

/ 대국민 공개

문서 한 장을 인쇄할 때 이산화탄소 5g이 발생합니다